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령친화산업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현행 법령 상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은 고시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, 우수제품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및 유효기간·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

이에 따른 입법 불비사항 보완을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,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우수제품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(안 제7조제3항)

나.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(안 제10조제4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.</u>
제10조(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) ① · ② ·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) ① ·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60